# 2011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건의)사항 및 의견서

# 지 적 (건의) 사 항 목 록

번호	제 목	비고
1	예비비 사용 부적정(공예체험관 상수도누수공사)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2	세외수입(기타잡수입) 관리소홀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3	지방세 체납액 관리 우수 (재무과)	처리계획 제외대상
4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액관리 소홀 (건설방재과, 기술지원과)	
5	일반회계 세입처리(과오납반환금)절차 부적정 (재무과)	
6	회계별 결손처분액 작성착오 (재무과)	
7	의약품 및 부식재료 관리운영 미흡 (보건의료원)	
8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추진 미흡 (보건의료원)	
9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미흡 (주민생활지원과)	
10	한약재유통시설 임차료 집행잔액 처리 부적정 (농축산과)	

# 지 적 (건의) 사 항 목 록

번호	제목	비고
11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미흡 (경제체육과)	
12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조성사업 추진 미흡 (문화관광과)	
13	2011년 체육시설 운영예산 미집행 (경제체육과, 진부면)	
14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대한 조치 소홀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경제체육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15	재산영농조합법인 관리감독 철저 (농업기술센터)	
16	한의약 건강증진사업비 예산집행 부적정 (보건의료원)	
17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 철저 (주민생활지원과, 도시주택과, 환경과, 재무과)	
18	시설부대비 예산운영 부적정 (산림과)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1

○ 제 목 : 예비비사용 부적정(공예체험관 상수도누수공사)

#### ○ 현 황

단위:천원

구 분	결정액(예비비)	지 출 액	집행잔액	비고
평창군 공예전시 체험관 상수도누수공사	3,000	1,519	1,480	

#### ○ 문 제 점

예비비는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 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임에도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 상수도 누수에 따른 보수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보수공사비를 예비비를 집행하였음은 물론 작업공정이 간단한 소규모 보수공사임에도 사업비 판단을 잘못 하여 결정액의 49%를 집행잔액으로 남긴채 반납하지 않았음

### □ 검사자 의견

O 사업부서에서는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기준에서 정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대한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예비비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중을 기하여 사용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2

○ 제 목:세외수입(기타잡수입) 관리소홀

#### 0 현 황

단위:천원

구 분	금 액	징수결정일	납 입	비고
평창군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가입 보조금 사용잔액	109,570원	2011.02.21	2011.02.21	이중징수결정
백룡동굴 입장료 수입	50,000원	2011.01.14 2011.01.17	2011.01.17	이중징수결정
전세주택사업비 사용잔액	3,250,000원	2011년	-	미수납

#### ○ 문 제 점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보조금 사용잔액 109,570원을 2011.02.21 이중으로 징수결정한 후, 실제 납입은 2011.02.21일 1건만 납입하였고 또한, 백룡동굴 입장료 수입 50,000원을 2011.01.14과 2011.01.17 중복, 징수결정하고 2011.01.17일 1건만 납입하여 현재까지 2건 159,570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음
- 전세주택사업비 사용잔액 3,250,000원을 2011년에 징수결정하였음에도 세입처리를 하지 않아 미수납으로 남아있음(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

### □ 검사자 의견

○ 이중으로 부과된 2건 159,750원의 징수결정 취소(감액)와 전세주택사업비 사용잔액 3,250,000원에 대하여 즉시 세입처리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3

○ 제 목:지방세 체납액 관리 우수

○ 현 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징 수 율
2011	25,035	22,902	2,133	91.5%
2010	22,808	20,250	2,558	88.8%

#### ○성 과

2011년도 결산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2,133백만원으로 91.5%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난년도 체납액정리 실적은 1,316백만원으로 52.7%의 정리실적을 보이고 있음. 이는 발생된 체납액에 대하여압류조치 등, 5,169건의 신속한 체납처분을 이행하여 이룬 성과로써체납액 정리에 대한 실무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됨

### □ 검사자 의견

O 앞으로도 체납액 관리에 대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등의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람.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4

○ 제 목: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액관리 소홀

## ○ 징수현황(경상적 세외수입)

단위:천원

연도별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징 수 율
2011	6,023,232	5,753,100	273,205	95.5%
2010	6,233,656	5,965,907	272,587	95.7%

### ○ 문 제 점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사용대가를 지불하는 형태의 과세로 납세자의 성실납부 독려와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함에도 도로사용료 징수율은 73%로 전년도에 비해 저조하며, 특히 기타사업수입(한약유통시설 위탁운영 시설사용료)의 미수납액이 2억원인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함

### □ 검사자 의견

○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한 철저한 자료관리를 통해 부과에 적정을 기하고 납기내 징수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5

○ 제 목 : 일반회계 세입처리(과오납반환금)절차 부적정

#### ○ 현 황

단위:천원

구 분	반 환 금 액	비고
계	1,518,000	
보통교부세	952,000	
국 고 보 조 금	566,000	

#### ○ 문 제 점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세입 처리시 회계 계정별 세입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지원금 1,518,000,000원을 적정한 검토없이 보통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처리하고 2011. 11. 15과 2011.07.15에 과오납 반환액으로 처리하여 정정이체 하는 등 회계질서를 혼란케 하였음

# □ 검사자 의견

○ 향후 세입처리 분야의 업무연찬에 철저히 기하고 실과소간에 원활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계정별 세입처리 시 과오납반환액으로 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6

○ 제 목:회계별 결손처분액 작성착오

#### ○ 현 황

단위:천원

과 목	결손처분액		사	유	별	
다 <u>두</u>	결 <b>근</b> 시군학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기타
계	2,342,987	55,913	_	1,905,617	381,457	
지방세수입	961,549	25,411	_	830,132	106,007	
세외 수입	1,381,438	30,502	_	1,075,485	275,450	

#### ○ 문 제 점

결산서 작성 시에는 결산관계서류의 내용 등, 관계 계수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함에도 회계별결손처분액 일반회계자료 작성시 사유별 시효소멸란의 결손처분액 284,931,280원을 착오 작성하는 등 결산서 작성에 오류를 범한 사실이 있음.

# □ 검사자 의견

○ 향후 결산서 작성시에는 충분하고 세밀한 검토를 하여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기 바라며, 착오 작성된 결손처분액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수정하시기 바람.

# 【별 첨】

# (7)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 나. 회계별 결손처분액

일반회계

단위 : 원

									단위 : 원
	ī	<b>과</b>	목	거스티 H All			사 유	별	
장	관	항	목	결손처분액	무 재 산	행방 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기 타 (평가액부족)
	ī	합	계	2,342,986,960	642,752,220	-	1,109,198,240	279,128,800	311,907,700
지배	방서	ll수 (		961,549,290	607,008,830	_	42,632,760	_	311,907,700
	지	방세		961,549,290	607,008,830	-	42,632,760	_	311,907,700
		보통	를세	351,046,040	325,125,570	-	-	-	25,920,470
		3	주민세	499,550	365,650	-	-	-	133,900
		;	재산세	82,061,140	62,833,970	-	-	-	19,227,170
			자동차세	10,466,740	8,626,870	-	-	-	1,839,870
		,	지방소득세	258,018,610	253,299,080	-	-	-	4,719,530
	지난년도수입		· 년도수입	610,503,250	281,883,260	-	42,632,760	-	285,987,230
		2	지난년도수입	610,503,250	281,883,260	-	42,632,760	-	285,987,230
세의	외수	는입		1,381,437,670	35,743,390	-	1,066,565,480	279,128,800	_
	임	시적	세외수입	1,381,437,670	35,743,390	-	1,066,565,480	279,128,800	_
		부딤	} 금	1,171,990	1,171,990	-	-	-	-
		•	일반부담금	1,171,990	1,171,990	_	-	-	-
		잡수	-입	9,438,950	4,068,950	_	-	5,370,000	_
			과태료	7,476,840	2,106,840	_	-	5,370,000	_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962,110	1,962,110	_	-	-	-
			·년도수입	1,370,826,730	30,502,450	_	1,066,565,480	273,758,800	-
			지난년도수입	1,370,826,730	30,502,450	_	1,066,565,480	273,758,800	-
	-	작수 지난	- 입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간년도수입	9,438,950 7,476,840 1,962,110 1,370,826,730	4,068,950 2,106,840 1,962,110 30,502,450	-		5,370,000 - 273,758,800	- - - -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7

○ 제 목 : 의약품 및 부식재료 관리운영 미흡

#### ○ 현 황

단위:원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730,000	621,265	108,735	군 비

#### ○ 문 제 점

환자진료에 따른 의약품, 검사시약, 위생재료 등과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플러스 사업에 소요되는 부식재료 구입은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군비투자 사업임에도 당초 수요파악 미흡으로 108,735천원 의 집행잔액을 발생하였으며 단가계약업체의 부도로 의약품 납품이 지연된 사실이 있음

# □ 검사자 의견

○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요파악을 정확히 예측 하여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단가계약체결시 참여기준을 강화 하여 견실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8

○ 제 목 :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추진 미흡

#### ○ 현 황

단위:천원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250,000	141,577	108,423	국 비

#### ○ 문 제 점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평창군은 종합병원이 없어 보건의료원의 역할이 그 어느 지역보다 중요하며, 특히 긴급환자의 경우 1차응급 진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의료인력 확보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1차 의료기관의 역할에 차질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과다하게 발생시켰음.

# □ 검사자 의견

○ 의료인력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1차 진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따른 국비보조금의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9

○ 제 목: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미흡

#### ○ 현 황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고
계	7,048,558	6,649,639	398,919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146,510	104,264	42,246	
장애인 활동 지원	91,687	26,615	65,072	
요보호아동그룹형태보호	123,384	78,684	44,700	
기초노령연금지급	6,303,833	6,250,908	52,925	
경로당 동절기난방비 한시지원	237,000	74,126	162,87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46,144	115,042	31,102	

#### ○ 문 제 점

2011년 주민생활지원과 국·도비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임에도 수요파악 미흡으로 총6건 398,919 천원의 국·도비 집행 잔액을 발생케 하였음.

# □ 검사자 의견

○ 연례 반복적 사업에 대하여는 수요파악을 정확히 예측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10

○ 제 목:한약재유통시설 임차료 집행잔액 처리 부적정

#### ○ 현 황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집행일시
2011년 한약재 유통시설 임차료	1,079,200	1,022,276	56,924	2011.03.24

### ○ 문 제 점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성립 후 지출계획의 변경과 취소 또는 예산 집행이 완료되어 추가지출이 소요가 없는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하나, 2011년 한약재유통시설 임차료의 경우, 연초인 2011. 03. 24일에집행이 완료되어 추가지출 소요가 없음에도 추경에 반영하지 않는 등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반한 사실임.

### □ 검사자 의견

○ 예산집행이 완료되어 추가지출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11

○ 제 목: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미흡

#### ○ 현 황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고
깨끗한 happy700 청소용역	78,400	23,698	54,702	

#### ○ 문 제 점

예비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자리창출 사업은 취약계층을 50%이상 고용하여 재가노인, 공공시설, 경로당, 아동시설 등에 대한 소독과 방역활동을 실시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임에도 (유) 해피클린에 청소용역을 추진하면서 10명의 인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국비집행 잔액을 과다하게 발생케 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에 미흡한 사실임.

### □ 검사자 의견

○ 향후 청소용역사업계획 수립시, 적정인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체를 독려하여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하고, 국비보조금에 대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12

○ 제 목 :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조성사업 추진 미흡

#### ○ 현 황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고
동강유역 생태 관광벨트 조성사업	430,103	387,855	42,248	

#### ○ 문 제 점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강유역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은 2011년 중점추진 사업인 짚라인 설치공사와 도선제작 외에 특기할 만한 사업 및 보조목적에 적합한 사업이 없다는 사유로 집행 잔액을 발생케 한 사실임.

# □ 검사자 의견

O 철저한 사업계획수립에 따른 예산집행으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람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13

○ 제 목: 2011년 체육시설 운영예산 미집행

#### ○ 현 황

단위:원

교 부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640,000	-	640,000	

#### ○ 문 제 점

문화체육과 일상경비에서 연례 반복적으로 오대정궁도회에 전기사용 기본료를 지원하였으나 다른 체육동호회(족구 등)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민원제기를 우려하여 예산을 미집행 하였음

# □ 검사자 의견

○ 체육단체 등과 같은 동호회에 지원해 주는 예산에 대하여는 민원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14

○ 제 목: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대한 조치 소홀

#### ○ 현 황

단위:천원

부서 사업명	예산액		착금액		미착금액		
부서	기 실 <sup>전</sup>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3,772,646	985,982	3,594,256	955,114	178,390	30,868
주민생활 지 원 과		1,408,623	454,418	1,386,346	449,014	22,277	5,404
자 치 행정과	새마을지도자자 녀장학금외 1건	467	14,381	467	11,237	-	3,144
경 제 체육과	공공근로사업	-	9,900	-	9,750	-	150
보 건 의료원	한의약건강증진 사업 외 1건	3,291	-	-	-	3,291	-
농업기술 센 터	한약제 유통 시설지원외 6건	2,360,265	507,283	2,207,443	485,113	152,822	22,170

### ○ 문 제 점

주민생활지원과 외 4개부서 18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보조내시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사업비가 삭감되거나 미착금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세입결산에 차질을 초래하였음

# □ 검사자 의견

○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발생된 미착금 또는 삭감액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정리하시기 바람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15

○ 제 목:재산영농조합법인 관리감독 철저

#### ○ 현 황

단위:천원

보 증 채 무 현 황 구 분					채 무 자
一 正	보증금액	보증기간	상환기간	현재액	(채 권 자)
계	2,710,320			721,480	. 재산영농조합법인
성장작목 시범단지 조성	2,000,000 710,320	2012.06.30 2024.07.31	2012.06 2024.07	105,880 615,600	(봉평농업협동조합)

#### ○ 문 제 점

현재 재산 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에 대한 보증채무상환잔액이 615,600 천원이며 농가부채경감에관한특별법 지원자금 대출로 대환처리되면서 보증기간이 2024년 7월까지 연장되었으므로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법인에 문제가 생길경우 채무보증에 따른 평창군의 위험부담이 발생 할 수 있음

# □ 검사자 의견

○ 재산영농조합법인의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실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 하기 바람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16

○ 제 목:한의약 건강증진사업비 예산집행 부적정

### O 현 황

단위:천원

n oleh	예산	현황	지출현황	
사업명	도비	군비	도비	군비
한의약 건강증진장비구입	2,571	1,289	-	3,856

#### ○ 문 제 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예산 3,856천원(도비2,571천원 군비1,289천원)을 집행함에 있어 도비 보조계획이 변경되어 사업비가 미착금 되었음에 도 사업추진에 대한 재검토를 하지 않은 채 3,856천원 전액을 군비로 집행한 사실임

# □ 검사자 의견

○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착금여부를 확인한 후, 집행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 재원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예산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실시하여 추진하기 바람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17

○ 제 목: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 철저

#### ○ 현 황

단위: 천원

회 계 별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비고
계	37,687,918	36,892,835	795,083	
주택사업특별회계	637,763	82,702	555,061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04,222	689,981	114,241	
수질개선특별회계	31,251,993	31,229,121	22,872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4,840,952	4,745,176	95,776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152,988	145,855	7,133	

#### ○ 문 제 점

특별회계 미수납액으로 인하여 세입결산에 차질이 발생할 뿐 아니라 군 재정의 열악함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특별회계 관리에 대한 적극 적인 대책이 필요함

# □ 검사자 의견

○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인적조직의 확충 및 철저한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미수납액이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18

○ 제 목:시설부대비 예산운영 부적정

#### ○ 현 황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고
2011년 숲가꾸기	124,114	40,124	7,990	76,000 (변경사용)

#### ○ 문 제 점

시설부대비는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수수료, 여비, 피복비, 임차료(차량, 선박) 등을 시설부대비 편성기준요율에 따라 편성하고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2011년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설부대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후, 시설비로 76,000천원을 변경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운영과 집행 잔액을 발생하게 한 사실임.

# □ 검사자 의견

○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요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고 예산편성범위내 에서 집행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